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31 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김영배・이학영・김영호

이훈기 • 이정문 • 문정복

박선원 • 손명수 • 한정애

김태선 · 전현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상 내란의 죄·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상 반란의 죄·이적(利敵)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 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,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 적이 있음.

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"복무 중의 사유"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

한편,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4항·제5항).

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 중 "복무 중의 사유로"를 "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.

⑤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4항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. 이 경우 급여의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8조제4항의
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제한) ① ~ ③ (생 략) ④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 • 제2장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 · 제2장[이적 (利敵)의 죄]. 「국가보안법」 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군사기 밀 보호법 | (제13조의2와 제15 조에 한정한다)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하되.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. <단서 신설> --. 다만, 퇴직급여를 이미 지 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 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 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기여금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. ⑤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4항에 <신 설>

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한 다.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